

2025년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JVADA에서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우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벤처기업확인'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컨설팅, 심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판로 개척 및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

***** 다 음 *****

- 사업주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사업주관**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중소·벤처기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0월
- 모집기간** : ~ 11월(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주요 지원내용**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컨설팅 및 심사비용의 최대 80%(단, 최대 100 만원 이내)
- 지원방식**
 - 모집 기한 내 신청한 기업의 내부 평가 후 선정 진행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VAT) 업체 부담
- 지원자격 제외 대상**
 - 사업기간 이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유효기한 내인 기업 (※2025년내 신청 가능)
 - 복수지원 신청 불가(JVADA 벤처기업육성지원 사업 내 타 세부 사업)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 중복지원 받은 경우
 -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국세, 지방세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업체
 - 부도 등으로 인한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공지사항내에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방문접수**
 - 신 청 처 :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벤처촉진팀
 - 연 락 처 : TEL. 063-241-6226, FAX. 063-214-6446, E-mail. mdchoi@jvada.or.kr
 - 홈페이지 : www.jvada.or.kr
- 관련서식** : 첨부파일 참조
※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일체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서식 1]

[2025년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이메일	/
설립일자		업 종		C코드(5자리)	
주생산품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보유인증	<input type="checkbox"/> 이노비즈 <input type="checkbox"/> 메인비즈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업현황	2022	2023		2024	
총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세부인력 구성현황	총고용인원	명	연구개발직	명	기술직
	기능/생산직	명	사무관리직	명	기타
특기사항 (해당사항시)	<input type="checkbox"/> 기업 부설연구소 (구축연도: / 고용인원: /) <input type="checkbox"/> 전담부서(구축연도: / 고용인원: /) <input type="checkbox"/> TFT (구축연도: / 고용인원: /) <input type="checkbox"/> 산업체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보유업체(권명: , 등록건수:) <input type="checkbox"/> 해외품질규격 인증업체(인증명:)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특구내 입주기업				
	JVADA 지원사업 수혜현황 (최근 3개년)	사업명	과제명	사업기간	지원금 (천원)
		예)시제품제작지원사업		21.03~21.06	15,000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간신(재발급)		
추진 방법 (컨설팅기관명)					

2025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내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및 확약서 1부.
4. 신청업체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서 1부.
5. 컨설팅 수행계획서 1부.
6. 청렴계약이행각서
7.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1부.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확인	
------	--	-----	--	--------	--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확인 방법(신청서 작성 후 삭제)

- <https://www.smes.go.kr>(벤처기업확인증합관리시스템)에서 진단 후 진단결과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서식 2]

[2025년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

업체명		담당자	
연구개발조직 보유여부		투자 유치 경험	
<input type="checkbox"/> 회사소개(일반현황 및 주생산품 등)			
<input type="checkbox"/> 주요 연구개발 경험(R&D 과제 등)			
<input type="checkbox"/> 투자유치 경험(해당 시) <i>* 유치시기, 투자기관명, 유치금액 등을 상세히 작성</i>			
<input type="checkbox"/> 업체 내 연구개발 투자비율 분배 <i>* 참고서류 1. 인건비 산정 내역서 * 참고서류 2. 인건비 외 모든 개발 비용 산정내역서 * 참고서류 3.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i>			

※ 회사 제품 카다로그 및 관련자료 첨부

신청업체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담당자	직위	연락처	전 화	
	성명		모바일	
※ 약도첨부				

[서식 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 벤처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사업*과 지자체 유사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 지원을 하거나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을 물론 기 수령금을 즉시 반활할 것을 확인하며, 해당 사업 사업주관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목록>

- ▶ 벤처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 제품고도화지원사업
- ▶ 기술경쟁력강화지원사업
- ▶ 기업맞춤형활성화지원사업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서식 4] 2025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

확약서

2025년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내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업체 중 **사업기간내(2025년) 인증을 획득한 업체** 중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 소진 이후 신청업체는 인증 획득 후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특성상 선착순 마지막 일부 업체는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3. 본 건은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금액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총 소요비용의 최대 80% 지원**).
4. 컨설팅 수행기관의 수행계획서를 충분히 숙지 후 지원신청 하여야 합니다.
5. 사업의 참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에 맞추어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컨설팅 진행 여부 통보(이메일 또는 공문)
 - 협약기간은 통보일로부터 90일이며, 기간 내 발급 완료시 결과보고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협약을 조기 종료합니다.
6. 사업비의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5'와 같이 사업참여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기업 대상
 - 상기 '2'와 같이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중 선착순 지급
 - 사업비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사업참여 통보와 관계없이 사업비 지급 불가
7. 벤처기업확인서 미제출시, 신청은 취소되며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후 타 업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8.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지원금은 전액회수 하며 앞으로의 발전협의회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업체는 신청기간 내 또는 종료 후에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의에 따라 본 사업을 진행하며,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5]

2025년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기간 변경 신청서

인증명			
업체명		대표자	(인)
신청일자			
컨설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향후계획			
기타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확인	

■ 기간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기간변경 신청서 작성요령

- 기간변경 신청서는 반드시 완료기간(신청 후 2개월) 이전에 제출요망
- 현행 컨설팅 및 기간은 신청접수에서 3개월까지의 기간을 기입
- 변경 컨설팅 및 기간은 신청접수에서 5개월까지의 기간을 기입
- 변경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입

○ 기간변경 조건

- 지원변경은 1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의 연장 가능(최장 2개월)
※ 신청접수 후 5개월 초과시 재신청 요망

○ 기간변경 신청서 제출

- 작성된 보고서에 선정업체의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기간변경 승인

- 기간변경 신청서 검토 후 유선(전화)연락 및 문서발송 후에 기간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보며, 사업을 진행
- 기간변경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실패로 처리하고,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후 타 업체 지원

[서식 6]

신청업체와 컨설팅기관 간의 계약서

- 사업명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

- 계약당사자

(갑) : _____ (신청기업)

- 주 소 :

- 대 표 :

(을) : _____ (컨설팅기관)

- 주 소 :

- 대 표 :

위 벤처기업확인 컨설팅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1) 본 계약은 (을)이 (갑)이 요구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 (2) (갑)의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며, (을)은 (을)의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컨설팅을 수행한다.

제2조(제작기간)

- (1)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 2025년 월 일까지 (3개월)로 한다.
- (2) 인증획득에 따른 계약기간이 연장 또는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고, 반드시 사전에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 조 (컨설팅 대가의 지급)

- (1) (갑)은 (을)에게 컨설팅 수행의 대가로 금 원(₩ 원)을 지급한다.
- (2) 컨설팅 수행 대가란 신청기업이 컨설팅 수행에 소요된 컨설팅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컨설팅 기관에 지불함을 말한다.
-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모든 대금은 온-라인(On line) 통장으로 지불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1)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상호협조) (을)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자료협조) (을)은 (갑)이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보장)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명칭 사용)

(갑)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을)이 (갑)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 등을 (을)의 동의없이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을)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계약자의 해지)

- (1) ((갑)의 해지)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을)의 해지) (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갑)에게 이를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해지협의)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컨설팅 수행 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은 기성부분에 한하여 정산한다.
- (4) (기타)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전항의 협의서에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 사업의 사업 계획서 및 (갑)의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회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컨설팅 수행 계획서 1부[서식 7].

2. 비밀유지각서 1부[서식 8].
3. 컨설팅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4. 변리사 자격증 1부.

2025년 월 일

“갑” 업체명 :

주 소:

대 표: (인)

“을” 제작기관 :

주 소:

대 표: (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Jeonju Venture-Business Areas Development & Promotion Association

[서식 7]

2025년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수행계획서

위 수행계획서에 의거 신청업체의 벤처기업확인서 획득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업체에 성실히 이행 하겠으며 지원사업 규정 위반에 따른 귀 협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컨설팅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식 8]

비밀 유지 각서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컨설팅 지원업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이하 “갑”이라 한다.)의 과제에 참여하여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는 컨설팅업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하고 “을”이라 한다.)가 과제 수행 중 “갑”的 지적재산 및 유/무형의 재산을 습득하여 “을” 자신 및 타인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며, 과제 수행 중 과제와 관련되어 습득한 모든 사항 및 기술내용에 반드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일자 : 2025년 월 일

서 약 자(을) : (인)

(* “갑”은 본 문건을 사업 계획서 제출 전에 “을”에게서 서약서를 받고, 사업 계획서 제출 시 사업자(원조대조필)을 하여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시행하는 「**2025**년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의 공정성을 기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행합니다.

1. 벤처기업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기관과 담합을 하여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협의회와의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협약이행 이후에는 당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벤처기업확인 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 타 기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협의회와의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협약이행 이후에는 당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당 협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장 귀하